건신인권센터 운영 규정

2022년 11월 01일 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(이하 "본교"라고 한다)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건신인권센터(이하 "센터"라고 한다)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"인권"이라 함은 「대한민국헌법」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성별·종교·국적·장애·사상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폭언·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.
- ② "침해행위"라 함은 괴롭힘, 성희롱, 성폭력, 2차 가해행위 등 제1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③ "괴롭힘"이라 함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, 연구,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
- ④ "성희롱"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,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 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.
 - 가. 상대방이 동의하지 아니한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, 정신적,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
 - 나.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, 고용, 연구,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써 가목의 행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 사 표시를 하는 행위
- ⑤ "성폭력"이라 함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⑥ "2차 가해행위" 라 함은 당해 사건 이후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 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, 기타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

- 를 유발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.
- ⑦ "사건관련자"라 함은 신고인, 피해자, 피신고인,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.
- ⑧ "신고인"이라 함은 침해행위를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.
- ⑨ "피해자" 라 함은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침해행위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.
- ① "피신고인"이라 함은 침해행위를 행한 것으로 지목되어 센터에 신고된 사람 또는 신고 이외의 경로로 침해행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.
- ① "참고인"이라 함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신고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·간접의 경험,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.
- ⑩ "사건당사자"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인을 말한다.
- ③ "행위자"라 함은 피신고인 중에서 이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, 그 침해행위의 혐의가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.
- **제3조(적용범위)** ① 이 규정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 게 적용된다.
 - ② 침해행위로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관하여 사건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.
- 제4조(구성원의 의무) ① 본교 구성원은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.
 - ② 본교 구성원은 서로에 대하여 성별·종교·국적·장애·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③ 본교 구성원은 타인에 대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, 이를 묵인해서도 아니 된다.

제2장 조직과 업무

- **제5조(조직)** 본교에 사건의 피해 관련 상담 및 조사, 피해자 지원 및 구제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과 연구, 교육 개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둔다.
 -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 한다.
 -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③ 센터에는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업무)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,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
- 1. 침해행위관련 상담 조사 및 정보제공
- 2.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 기타 개인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
- 3. 피해자 지원 및 구제
- 4. 기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업무
- ②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
- 1. 구성원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컨텐츠 개발
- 2. 인권 의식 및 침해행위 실태조사
- 3. 인권 관련 제도 규정 개선을 위한 연구
- ③ 성희롱 ·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
- 1.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
- 2.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과 본교 구성원의 인권과 성평등 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
- 3. 괴롭힘 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
- 4. 성희롱 · 성폭력 · 성매매 ·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
- 5.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교육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교육
- ④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**제7조(운영위원회의 기능, 소집과 의결)**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센터장의 자문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 센터의 사업 · 운영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
 - 2. 이 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 - 3. 본교 구성원의 인권보호, 침해행위 방지, 피해자 지원 및 구제를 위한 정책 및 관련 교육 컨텐츠 개발,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 - ③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본교「위원회 설치 규정」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.
- **제8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**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,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되, 본교 전임교원과 직원 및 대학원생 중 위촉한다.
 - 단,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,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

-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
- ④ 교학처장,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같은 성별이 60%를 넘지 않도록 한다.
-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**제9조(재조사위원회)** ① 재조사가 청구된 사건의 재조사 개시 여부의 결정 및 재조사와 처리를 위하여 센터에 재조사위원회를 둔다.
 - ②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전원을 같은 성별로 구성할 수 없다. 위원장은 전임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및 심의 의결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재조사위원으로 위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외부전문가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 - ③ 센터장은 위원장을 겸임하며 당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여하였던 위원은 재조사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④ 재조사위원회는 재조사가 청구된 사건에 대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재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, 재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며, 피신고인의 침해행위 혐의의 인정,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심의 · 의결한다.
 - ⑤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단, 징계의 요구에 관한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
 - ⑥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조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⑦ 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의 소집 시점부터 사건의 종결 시점까지로 한다.

제3장 사건의 조사와 처리 등

- **제10조(사건의 신고와 관할)** ①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.
 - ② 신고 방법은 서면이나 센터 대표 메일, 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.

- 제11조(사건의 조사와 종결) ① 센터는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를 위하여 사건당사자에게 조사개시를 고지하고 조사 및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 - ② 센터는 사건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③ 센터는 사건의 정황과 진위 여부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건관련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.
 - 1. 이 규정에서 정한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2.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
 - 3. 센터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
 - 4.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
 - 5.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⑤ 사건을 조사종결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⑥ 센터는 조사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.
- **제12조(직권조사)**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센터장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.
 - 1. 제9조 제1항 이외의 다른 경로로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,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,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2.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
 -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해서는 본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.
- 제13조(조사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) ① 운영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당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
 - 2.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
 - 3. 신고인,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와 같은 학과(혹은 전공), 부서 소속인 경우
 - ② 운영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의 조사 및 처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.
 - ③ 사건당사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센터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- **제14조(사건관련자 보호의 원칙과 절차적 권리보장)** ①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는 사건관련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.
 -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무 수행자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피해자는 피해사실과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및 징계요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.
 - ④ 사건당사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대리인(법정대리인 또는 당사자가 선임한 자연인이나 단체)을 동반하거나 조력을 받을 수 있다.
- 제15조(사건의 처리와 통지)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사종결하기로 한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운영위원회 및 재조사위원회는 제11조 제4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기각한다. 이 경우 센터장은 사건당사자 및 신고인에게 그결과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피신고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,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및 재조사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제4장에서 정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센터장은 그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당사자에게 조치사항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직권조사 사건의 처리 및 통지에 관하여는 위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**제16조(조정)** ① 센터장은 사건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.
 - ② 센터는 양 사건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방안(이하 "조정안" 이라고 한다)을 제시할 수 있다.
 - ③ 사건당사자 모두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안에 따른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조사 및 처리절차가 종결된다.
 - ④ 센터는 조정을 통하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.
 -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장 조치 및 징계요구 등

제17조(조치)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, 재조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다음 각

호에서 정한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할 수 있다.

- 1. 피해자와 피신고인 간의 분리조치 및 피신고인에 대한 접근 연락금지 명령
- 2.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행위 등의 공모방지를 위한 피신고인 간의 분리조치
- 3.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
- 4. 행위자에 대한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
- 5. 행위자에 대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명령
- 6.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- ② 센터장은 사건의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신고인과 소속부서의 장 및 2차가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주변인 등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.
- 1.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지
- 2.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및 접근 연락금지 명령
- 3.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행위 등의 공모 금지
- 4. 피해자의 주거, 사무실, 연구실, 강의실, SNS 등의 적법한 점유 및 활동공간으로 부터의 퇴거, 격리 등 공간분리 조치
- 5.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**제18조(형사고발)** 센터장은 신고된 침해행위가 제2조 제3항에서 제6항에 해당하고,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, 긴급한 경우에는 자신의 결정으로,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할 수 있다.
- **제19조(징계의 요구)**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, 또는 재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결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징계를 요청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, 그 판단과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부서에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병과 할 수 있다.
 - 1. 본교 규정에서 정한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.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3. 제17조에서 정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 - 4.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5. 센터의 조사활동 및 센터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②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, 징계 또는 기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- 제20조(가중조치 및 가중징계)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또는 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위자에게 제17조에서 정한 조치에 대하여 가중조치하거나 해당 기관에 가중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 - 1. 행위자가 재범인 경우
 - 2. 행위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3. 행위자가 사건관련자에게 보복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
 - 4.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행위자가 사건관련자에 대한 신원 노출이나 명예 훼손 등 2차 가해행위를 하였을 경우
 - 5. 사건관련자 또는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 등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지속 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
- 제21조(제3자의 조사 활동 방해 등에 관한 처분) 센터장은 사건당사자가 아닌 자 (이하 "제3자" 라 한다)로서 2차 가해행위를 하거나 센터의 조사활동 및 센터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속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- **제22조(재조사)** ① 운영위원회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당사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재조사는 사건당사자가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.
 - ③ 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시한다.
 - 1.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
 - 2. 조사과정 중 검토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
 - ④ 센터장은 재조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제5장 불이익 금지 등

- 제23조(불이익 금지)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하거나 절차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, 전보, 징계,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- 제24조(비밀유지의무)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은 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 등 사건관련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관련 소송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- **제25조(자료의 열람)** 센터는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.
- **제26조(비용의 지원)**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조사 및 처리절차에서 증 거자료확보와 긴급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.
- **제27조(인력관리)** 센터는 전문인력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28조(관계기관의 협력 의무)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,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사건관련자 및 소속부서의 장에게 제도·정책·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및 적절한 피해자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 - ② 학내 관계기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 및 권고에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재정 및 운영) 센터의 운영경비는 교비회계로 한다.
- 제30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